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김경완의원 발의〕

의안번호	2190

발의일자 : 2022. 3. 17.
발 의 자 : 김경완 의원
찬 성 자 : 류명기 의원

1. 제안이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정하여 금천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주거복지사업 (안 제 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거기본법」 제3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2. 2. 17. ~ 2.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5조(주거복지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